



미래창조과학부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`17년 6월 연구실안전 현장검사 계획 통보

1. 귀 기관(연구소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

가.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11조

나. 미래창조과학부 연구환경안전팀-424(`17.2.22., `17년 상반기 검사계획 통보)

3. 위 관련 근거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을 보유한 대학·연구기관 등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및 사고예방을 위해 연구실안전 현장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.

가. 검사일정: 기관별 상이(붙임 참조)

나. 검사대상: 대학, 연구기관, 기업부설연구소 등 77개 기관

다. 검사반: 미래부 공무원 및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검사팀

라. 검사내용

- ?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? 이행여부 확인

- 고위험 연구실 현장 표본검사(기본 10개 연구실이나 기관규모별 차등)

4. 원활한 검사 수행을 위하여 ?`17.6월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계획(안)?의 붙임 양식에 따라 사전제출자료를 작성하여 방문 2주 전까지 아래의 전자메일로 제출하고 현장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단, `17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참여한 기관은 사전제출자료 생략

< 문의 및 제출처 >

- 한국생명과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실안전팀

- 전화: 043-240-6451~7, E-mail: labsafety@kribb.re.kr

붙임 `17.6월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계획(안) 1부.

`17.6월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상세일정(안) 1부. 끝.

'17년 6월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계획(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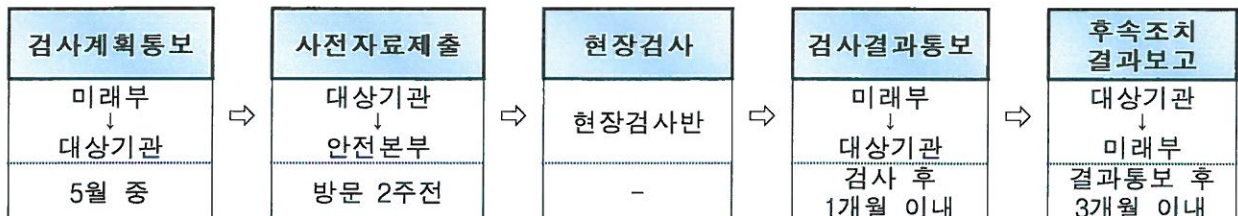
(’17.5.16. 미래부 연구환경안전팀, 02-2110-2784)

□ 목적

-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안전한 환경속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**현장방문하여 문제점을 지도·개선**
 ※ 수행근거: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4조(정부의 책무) 및 제11조(검사)

□ 현장검사 개요

- (검사기간) ’17.6.1.(목)~30.(금)
- (검사대상) 대학,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 77개* 기관
 * 대학 30, 연구기관 6, 기업부설연구소 41
- (검사반) 현장검사반 2~4명 구성(미래부,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등)
 * 기관특성 고려 일부기관 전문가 참여 및 LMO현장검사 대상 시 합동검사 실시



□ 주요내용

- (기관장 면담) 상위관리자 면담을 통해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**안전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 제고**
- (법 이행 검사) 정기점검, 보험가입, 건강검진 등 법령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**안전관리 종합평가점수를 부여***
 * [붙임3] “연구실 안전관리 현황검사표” 활용
- (표본검사) 위험도가 높은 10개 연구실을 임의 선정하여 안전관리 상태에 대한 **현장표본검사 및 연구자 안전교육 실시**
 - 주요 안전관리 미흡사항을 확인하고 검사장비*를 활용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잠재된 위험성을 점검하여 연구자의 안전확보
 * TVOC측정기, 열선풍속계, 열화상카메라 등

□ **검사절차**(250분 내외 소요)

점검순서	소요시간	세부내용	비고
기관현황 설명	약 20분	기관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설명	안전환경관리자
법이행 검사	약 90분	안전관리 현황 검사표에 따라 검사	현장검사반
연구실 표본검사	약 120분	점검·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 확인 등	현장검사반
총 평	약 20분	기관 상위관리자 등 관계자 면담 및 안전관리 주안점 안내	현장검사반

□ **검사 준비사항**

- 사전제출자료*를 작성하여 방문 2주 전까지 아래에 안내된 전자 우편주소(E-mail)로 제출 및 법 이행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준비

* [붙임2]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사전제출자료

< 문의 및 제출처 >

-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안전팀
- ☎: 043-240-6451~7, 6465~7 E-mail: labsafety@kribb.re.kr

□ **향후계획**

- 기관별 상세일정에 따라 현장검사 실시: 6.1.~30.
- 현장검사 후 1개월 이내 검사결과 통보: ~'17.7월